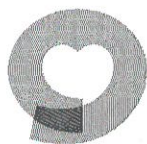


평생건강, 국민행복,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



국민건강보험공단

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본인부담 경감 제도 개정 관련 요양기관 홍보 협조 요청

1. 평소 건강보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협회(학회)의 건승을 기원합니다.
2.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본인부담 경감 적용기준 확대 관련 고시 개정(제2019-275호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 협회(학회)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, 아울러 협회소속 병·의원 및 약국에도 관련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

◎ 주요내용 .. '붙임' 참고

- (경감적용일 연장) 출생일로부터 3년(36개월)이 되는 날까지 → 5년(60개월)이 되는 날까지
- (외래 본인부담률 인하)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 → 100분의 5로 적용

※ 경감시작일은 공단에 경감 등록(신청)한 날

◎ 시행일 : 2020. 1. 1.

붙임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 개정 사항 안내 1부. 끝.

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 장

수신자 대한병원협회장,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약사회장,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장, 대한치과의사협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

대리

김민경

팀장

이경원

부장

전결 12/18

협조자

시행 급여지원부-5176

(2019.12.18.) 접수

()

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, 19층(반곡동,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사) / <http://www.nhis.or.kr>
옥)

전화 033-736-3135

전송 (033)749-6355 / love_kooki@nhis.or.kr

/ 비공개(6)

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본인부담 경감 제도 개정 안내

I 제도 변경 사항

□ 주요 내용 ... 2020년 1월 1일 시행 예정

- 고시용어 변경
 - 저체중아 → 저체중 출생아
- 경감 적용기간 연장
 - (현행) 출생일로부터 3년(36개월)이 되는 날까지
 - (개정) 출생일로부터 5년(60개월)이 되는 날까지
-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(약국,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 포함)
 - (현행)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% 또는 10%
 - ※ 1세 미만 영유아가 의원 및 보건의료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 5% 적용 ('19.1.1.부터 적용)
 - (개정)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%

□ 유의사항

- 개정사항은 2020년 1월 1일 부터 적용
 - 2020년 1월 1일 이전 등록한 경감 대상자의 변경사항 적용 여부
 -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된 자(2015. 1. 2. 이전 출생자)는 해당 없음
 -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지 않은 자(2015. 1. 2. 이후 출생자)는 5년이 되는 날까지 경감 적용기간 연장 및 본인부담률 5% 적용
 - ※ 단, 경감이 종료된 자는 시행일(2020.1.1.)부터 경감이 재 적용되며 소급적용은 불가
- 예시) 경감 종료가 된, 출생일이 2016.9.25.인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

 - 2020.1.1. 이전 : 등록(신청)일 ~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(2019.9.24.)
 - 2020.1.1. 이후 : 시행일(2020.1.1.) ~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(2021.9.24.)
 - ※ 전, 후 사이의 기간(2019.9.25. ~ 2019.12.31.)은 소급적용 불가
- 별도의 재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공단 내 전산일괄처리 후 처리결과를 SMS로 통보
 - 사망자 및 대상자 삭제/해지/취소 건은 제외

II 자주 묻는 질문 답변

□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본인부담 경감대상 신청 시 유의사항

- 건강보험 자격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먼저 한 뒤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
- 제출서류 :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출생증명서
 -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 될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
 - 신청서에 ‘⑦요양기관 확인’ 작성된 경우 출생증명서 제출 생략
 - ⑦번 내용은 조산사 또는 의사(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니라도 가능)가 작성

□ 해외출생아 경감대상 신청 방법

-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, 해당 국가에서 발급 받은 출생증명서 및 몸무게와 재태기간이 확인 가능한 서류를 번역·공증하여 제출
- 외국국적의 출생아는 외국인등록번호(국내거소번호)로 건강보험 자격취득을 하여야 함

□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본인부담 경감 청구방법

- 경감 대상자인지 여부를 요양기관정보마당으로 확인 후 진료코드 F016(자동)입력하여 청구
 - 정보마당(medi.nhis.or.kr)/임신출산/조산아및저체중아/조산아및저체중아자격확인
- 조산아로 청구가 되지 않을 시, 공단에 해당 조산아의 자격 및 건강보험취득이 정상인지 확인하고, 문제가 없을 경우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(1644-2000)으로 문의
- 경감코드 (F016) 미적용의 경우 본인부담금 차액은 해당병원과 환자 직접 정산